

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【2022. 9. 20.(화) 10:00】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2년 9월 20일
전문위원 권 오 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2 - 73
- 나. 발 의 자: 김민석 의원 외 4명
- 다. 발의일자: 2022년 8월 26일
- 라. 회부일자: 2022년 9월 5일

2. 제안이유

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제약이 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연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의원의 정책 역량 제고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항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취지

-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의원들이 그 해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의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10조(연구활동 보고서 제출) 단서조항의 대상을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으로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것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항 ‘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’라는 지방의회의 의무에 따라 의원들의 연구단체 구성에 제한이 되는 조항의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대수 변화에 따른 연구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,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후 7월부터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그 해 11월 말까지 제출하기에는 기한이 촉박하므로 다음 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취지에 맞는 단서 조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□ 지방자치법 제46조

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